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18)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서비스(721000)	정기	1,000억원대	지방청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9X.9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목적으로 Text 설립된 ○○○○○○ 자회사로 '1X.11월 코스피 상장

- '2X12월 ○○○○이 ○○○○○ 지분 00.0%(1조5천억원)를 인수함에 Text 따라 ○○○○ 계열로 편입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ıl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 오류	2040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과다공제
	2	조약남용 (원천징수, BO)	18104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누락

Text Ⅱ 조사노하우

Table

적출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과다공제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과세·면세 겸영) 조사법인은 과세사업(전산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등)과

Text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정보통신공사, 교육서비스 등)을 겸영

Text 하는 사업자로,

Text - (반복적출사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가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의

Text **반복 적출사항**인 것을 확인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집중 검토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과세증병 조기 확보) 조사착수 직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세부 Text 대역 등을 제출 요청하여 과세증빙자료를 조기에 확보

Text - (공통매입 현황 파악) 조사법인은 정보통신공사 관련 매입세액(면세

Text 비율 00%)을 실지 <u>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으로</u> 분류(면세비율

Text 0%)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Text - (회계자료 확인) 조사법인의 회계자료를 검토하여, 회계전표 상 매입

Text 건별로 공사명이 기재되어 <u>있으며, 정보통신공사</u> 관련 매입세액을

Text 공사단위별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함

Text ○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20.1기~'22.2기 정보통신공사 관련 공통매입

Text 세액 000백만원을 **공사단위별 면세비율에 따라** 불공제액을 재계산

Text 하여 과다공제액 000백만원 불공제

Text ○ (법령검토) 사업단위별로 매입세액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Text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Text 관련 법령, 예규 모두 과세논리와 동일하게 판단함

Table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Table 예규 부가가치세과-1268 (2011.10.13.)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 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 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Text ○ (불복 없이 종결) 과세 논리 및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Text 조사법인으로부터 확인서 징취하여 불복 제기 없이 조사 종결

Table **적출** ② 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누락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이 (외화송금내역 검토) 조사법인은 '20~'23년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의 명목

Text 이로 외국법인에 000억원을 외화 송금하였으나, 동 기간 사용료소득

Text 지급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00억원에 불과하여 조사대상 쟁점으로 착안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원천징수 누락혐의 확인) 사용료소득 지급액으로 신고되지 않은 외화

Text 송금액에 대해 계약서 검토 및 직원 인터뷰를 진행한바 국내사업장이

Text 없는 외국법인 ABC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누락

Text 혐의 확인

Text - (계약서 검토) 조사법인은 기존 여객수입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Text ABC의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시스템 변경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Text ABC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Text - (직원 인터뷰) 담당직원 인터뷰 결과, ^①위 솔루션은 항공사 업무에

Text 특화된 시스템으로, ^②약 9개월에 걸쳐 **조사법인의 환경에 맞게**

Text customizing 작업을 거쳤으며, ^③구축 5년 이후 Source Code를 제공

Text **받아 관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함

Text - (NTIS 자료활용) NTIS에 구축된 외화송금자료를 활용하여, ABC에

Text 외화를 송금한 타 사업자는 지급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Text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과세논리 강화

Text ○ (사용료소득 해당) 계약서와 직원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상기

Text 솔루션은 단순 시스템 도입이 아닌 **노하우 및 기술 등을 도입**한 것으로

Text - 조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한·독일간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제한

Text 세율 2%에 해당하여 원천세 00백만원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Text **00백만원** 과세

Table

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 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u>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u>되는 경우
-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u>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u>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Table

법령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2조 【사용료】

-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 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Table

예규 사전-2022-법규국조-1073 (2023.02.0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으로부터 수익관리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갑법인의 사정에 맞게 일부 개발·수정하여 도입하되, 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에 개발·수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관리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A 법인으로부터 해당 수익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독점적이고 양도불가능한 사용 권한을 수락받는 한편 A법인은 자신의 사업상 판단에 따라 해당 수익관리시스템을 다른 항공사 등에 배포할 수 있고 갑법인은 기본계약기간 종료 이후 그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갑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기본 프로그램 도입가격 및 개발·수정분에 대한 추가 대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허여계약에 따른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제 93조제8호가목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불복 없이 종결) 조사법인은 쟁점금액이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사업

Text 소득임을 주장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규를 제시

Text 하며 조사법인에게 과세논리를 상세히 설명하여 불복 없이 조사 종결